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21일 /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11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327회 포항시의회(2차 정례회)

■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25. 12. 18.)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원한 여성가족과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펜타시티 한신더휴2차'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에 대한 협약체결 후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제안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위탁 운영 신청자의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 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한 위탁자 선정에 대한 심의결정으로, 국공립(시립)어린이집 운영체 선정의 공정성 강화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제안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 동의)

3. 위탁시설 현황

위탁대상	위 치	세대수	예상정원	연면적	비고
(가칭)시립한신더휴2차어린이집	홍해읍 펜타시티단지로 25	1,597	70명	646.15㎡	

4. 위탁 계획

- 위탁기간 : 5년
- 위탁구분 : 신규위탁
-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사무	내 용	비 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장애,야간,영아,다문화) - 입소한 영·유아의 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 - 연간 보육계획서 수립 시행 - 어린이집 종사자, 이용아동,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복무, 후생 등에 관한 사항 - 포항시 특수보육시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위탁 신청 서류에 의한 운영 계획 등 평가
 - 2차 PPT 소견발표 : 전문성 및 운영능력 평가(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심사내용 : 운영 및 사업실적, 운영체(원장)의 전문성,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
- 수탁자 선정 방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2025년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공통 심사 기준표』 준용
 -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합산 제외
 -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70점이상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항목별점수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3.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4. 운영체의 공신력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5. 민간위탁운영의 적정성 심의 완료

- 충무새마을과 - 6587(25. 2. 18) : 적정
-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보육교직원 채용, 보육 프로그램 구성, 학부모 관리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를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평가 받도록 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위탁운영)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 되므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기존 확보된 인력 및 보육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위탁 운영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 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법령·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거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공교육 증대 국가정책과 저출산으로 인한 민간서비스 공급위축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도 민간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 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함

6. 향후 추진계획

- 2026. 2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3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수탁자 결정
- 2026. 3월 ~ 5월 : 사업비 교부, 리모델링 등 개원 준비
- 2026. 5월 : 개원

7.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요지(전문위원 : 김경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펜타시티 한신더휴 2차’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위탁체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데 대하여는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9. 토론의 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